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1. 11. 10.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21.3.15.)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1-212호, '21.5.1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 가. 중 첫 번째 예시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홍삼음료에” 를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로 한다.

제2조 3. 라. 중 두 번째 예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를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로 한다.

제2조 3. 바.를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

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광고.”를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 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광고.”로 한다.

제2조 3. 차 중 하단 “표현은 제외한다” 를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칙<제2021-89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예시) <u>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홍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u>	(예시) <u>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u> -----
(예시) (생 략)	(예시) (현행과 같음)
(예시) (생 략)	(예시)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예시) (생 략)	(예시) (현행과 같음)
(예시) <u>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u>	(예시) ----- ----- ----- ----- "L-글루탐산나트륨 (아미노산) 무첨가"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p>